

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(RSD) 수시점검

□ 개요

- 강제정차 수시점검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운행차에 의한 대기 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원격측정수시점검 실시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위한 원격측정 시행

□ 점용목적

-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을 위하여 측정기 및 부대장치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도로점용
- ※ 점용요청지점에 대한 사전 현장방문 및 이상유무 조사 완료

□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(RSD; Remote Sensing Device)

- 적외선/자외선을 이용하여 주행상태 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로서 차량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탄화수소(HC), 일산화탄소(CO), 질소산화물(NO), 매연 측정 및 차량번호판 촬영
- 무정차, 비접촉 방식의 배출가스 측정이므로 차량 소통에 영향이 없으며, 트래픽콘, 안전표지판, 차량 유도요원 등의 배치로 차량운행의 안전성 확보

□ 측정기 설치·운영방법

- 갓길이나 안전지대에 측정차량 주차,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 양쪽에 배출가스 원격 측정기를 설치하여 운행상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

□ 측정장소 :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진·출입로



(그림) RSD 도로측정 현장(전방)



(그림) RSD 도로측정 현장(후방)

□ 작업 장소 안전 확보 대책

- 작업자의 안전 대책
 - 야광 안전복 착용



(그림) 안전복



(그림) 라바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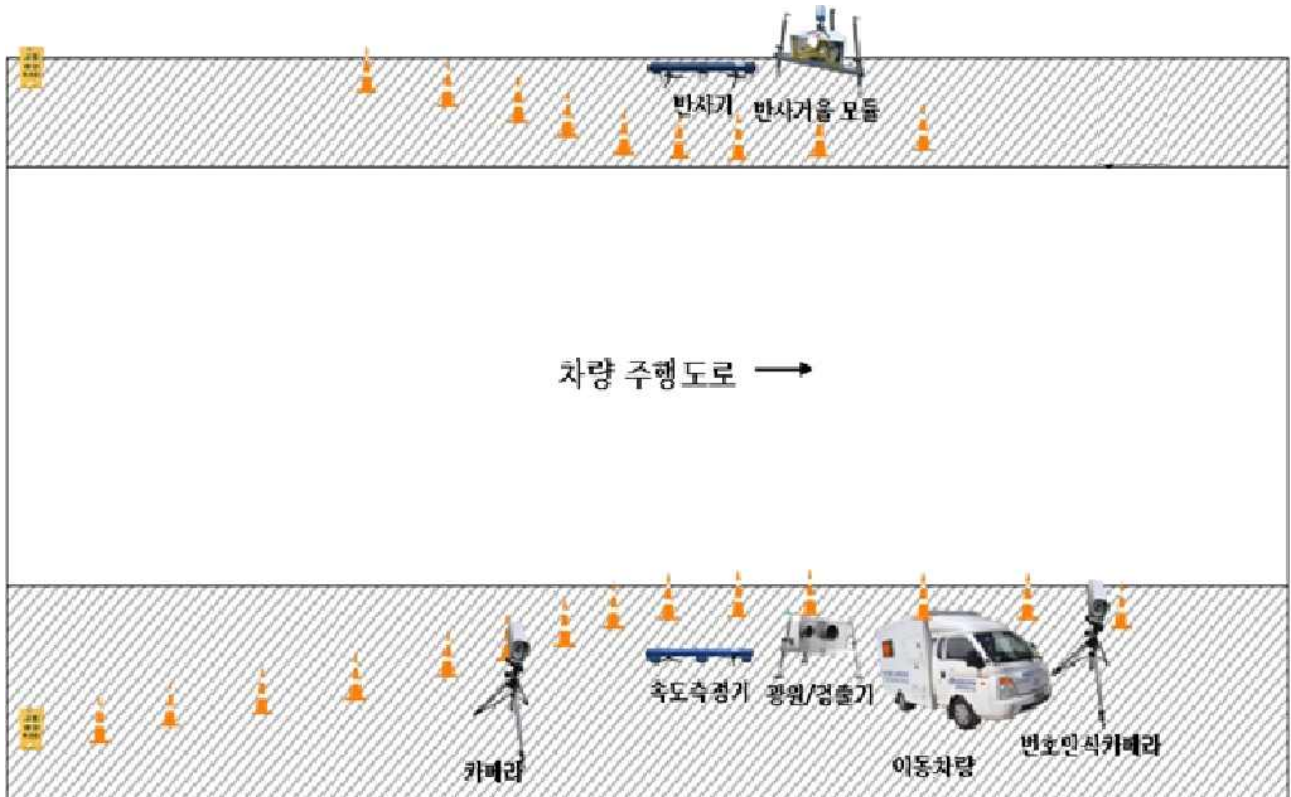
(그림) 안내표지판



(그림) 로봇신호수

○ 차량의 안전 소통 유도

- 라바콘 설치
 - 작업 장소 전방 약 50m지점부터 차선외부에 라바콘 설치
 - 운행 차량이 도로 외부로의 이탈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
- 안내표지판 설치 : 작업 장소 전방 약 50m지점에 안내 표지판 설치
- 로봇신호수 설치 : 운행 차량의 안전 운행 및 원활한 소통 유도



□ 배출가스 원격측정 배치 사진(예)

○ 신월IC



○ 가양대교 남단

